

# 지방의원 의정활동 홍보 예산 편성 및 우편요금 감액 건의안

의안 번호	1522
----------	------

발의연월일 : 2016년 11월 11일

발 의 자 : 김동욱·김인제·김미경  
이상목·김선갑·박기열  
김기대·송재형·문형주  
장우윤·박마루·우미경 의원  
(12명)

## 1. 주 문

-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의정활동 홍보자료를 선거구민에게 제작·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원과는 달리 유독 국회의원에게만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과 발송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고,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정보고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도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같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정치인이고, 특히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및 발송 비용을 자체 예산에 편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보고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임.

## 2. 제안이유

-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지방화·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전횡과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주민들의 복잡·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방행정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음.
- 또한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의 권리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입

법 및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사유로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모두 선출직 공무원이자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만 달리 할 뿐, 해당 선거구민에게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해야 할 의무와 필요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과는 달리 유독 국회의원에게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자료 발간(이하 “의정보고서”)과 발송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한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 제1호 마목에 의거 의정보고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지방의원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별도의 예산편성이 불가하고, 우편요금 감면 혜택도 전무하여 의정보고서 제작·발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큰 제약을 받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같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정치인이고, 특히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및 발송 비용을 자체 예산에 편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보고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임.

### 3. 이 송 처

-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지방의원 의정활동 홍보 예산 편성 및 우편요금 감액 건의안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지방화·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전횡과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주민들의 복잡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방행정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의 권리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본질적으로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무원이자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만 달리 할 뿐, 해당 지역구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해야 할 의무와 필요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과는 달리 유독 국회의원에게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자료 발간(이하 “의정보고서”)과 발송 예산(2016년 기준 52억 7,300만원 / 국회의원 1인당 1,758만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한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 제1호 마목에 의거 의정보고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감면혜택(우정사업본부 고시, 일반우편요금의 67% 감액)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원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9가지로 유형화하고,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어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보고서’ 제작 및 발송 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반영할 수 없다. 또한, 「우편법 시행규칙」에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의정보고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이 불가하고 우편요금 감면 혜택도 전무하여 의정보고서 제작·발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나아가 지방의원으로서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 등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같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정치인이고, 특히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및 발송 비용을 자체 예산에 편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보고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